

『SOL모임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SOL모임통장
- 상품특징: 모임원들과 거래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전용 입출금통장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제한	1인 최대 5계좌
예금과목	저축예금
가입방법	신한 SOL뱅크
연결제한	- 하나의 모임에는 한 개의 계좌만 연결 가능합니다. - SOL모임통장 또는 SOL모임적금이 연결되어 있는 모임에는 계좌를 추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자율 (2025.01.16 현재, 세전)	연 0.1%

이자산출근거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등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이자의 지급방법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방법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한은행 모바일뱅킹APP(신한 SOL뱅크)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① 이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② 이 예금에 연결된 "SOL모임저금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 단, 사망, 압류 등 사류 발생 시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해당사항 없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불가능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 (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거래 유의사항	-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모임장 개인 명의로 신규 된 계좌로 이 예금에 입금된 모임비 및 이자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가)압류, 사고등록, 금융사기계좌등록 등 모임장의 상태에 따라 이 예금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추심되거나 채무와 상계될 수 있으며, 모임장 사망 시 모임장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 보유 고객 및 이 예금을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신규 하시는 고객의 경우, 대표통장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별 1인당 1계좌만 보유 가능하여 추가 계좌 신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공동명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대출금 입금계좌, 대출 원리금 납부계좌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유동성한도 대출 이용, 증권연계계좌 등 대외기관과의 연결계좌로 이용 불가 - “저축예금, 불편한 입출금 통장 (저축예금), 주거래 우대통장 (저축예금),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 (저축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며, 연결된 모임과 연결 해제 시 일반 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센터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L모임통장』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 정보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국민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5계좌)	
기본이자율	연 0.10%	'25.01.16 현재, 세전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 1인 최대 5계좌 - 신한 SOL뱅크를 통하여 가입 가능
양도	불가
담보제공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